



법률상담 - 알기 쉽게 풀이한 축산물위생관리법령

본고는 민원인, 관련 단체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령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질의하여 회신한 주요 사례들 중에서 닭고기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.

본 내용은 회신 당시의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회신된 내용이므로 축산물위생관리법령,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, 축산물의 표시기준, 기타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현행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따라서 관련규정의 적용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자를 표기했으니 본 질의·응답집의 질의회신내용을 업무에 참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 등의 개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가금류 식육의 합교급식 납품 시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

질의

학교 급식 납품업체입니다. 가금류를 납품코자 하는데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. 현재 저희 업체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상태이며 가금류의 경우 재포장이나 소분판매를 하지 않고 하림, 체리부로, 마니커 등 업체의 생산품을 유통만 하고자 하는데 꼭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. 답변 부탁드립니다. 식육판매업이 필요할 경우 어떤 법령에 의해 필요한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.

회신일) 2011.02.07

회신내용)

- 닭, 오리 등의 식육을 구입하여 납품하는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,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식육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(참고 :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).

※출처 : 축산물위생관리법 질의·응답집